

#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2708
----------	------

2021년 11월 25일  
문화체육관광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나. 제출일자 : 2021년 8월 11일

다. 회부일자 : 2021년 8월 18일

라. 상정결과 : 제30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
(2021년 9월 9일, 상정·보류)

제30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7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
(2021년 11월 25일, 재상정·원안가결)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(문화본부장 주용태)

### 가. 제안이유

- 서울시에서는 시민에게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 양질의 공연예술 활동을 제공하기 위하여 각종 사업을 수행하는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.
- 이에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함.

## 나. 주요내용

### (1) 사업개요

- 사 무 명 :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금
- 추진근거
  -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  -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- 필 요 성 : 서울의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등 사업수행을 위하여 출연 필요
- 사무내용
  - 음악연주활동
  - 음악·공연 교육사업 및 조사·연구
  - 연주자 육성사업
  - 공연예술시설의 관리·운영
  - 국내·외 공연예술단체와의 교류·협력
  -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 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이 위탁하는 사업
  - 그 밖에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한 부대사업

### (2)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기관 개요

- 소 재 지 :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5
- 규 모 : 건물 2,043.58 $m^2$
- 소요예산 : 202억 2천만원(20,220백만원)

## 다. 참고사항

(1) 관계법령 : 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(2) 예산조치 : 2022년도 예산편성

(3)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김경욱)

#### 가. 동의안 개요

- 본 동의안은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2회계연도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자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것임.

#### 나. 출연의 필요성

-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(이하 '서울시향')은 1957년 발족되어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의 예술단 중 하나로 운영되다 2005년 6월 서울시 출연기관 중 하나인 재단법인으로 독립되었음.

서울시향은 서울시민을 위한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고, 문화 도시 서울의 음악적인 수준과 역량을 국내·외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운영되는 만큼 출연의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.

#### 다. 출연 규모의 적정성

- 우리 위원회는 지난 9월에 열린 제302회 임시회에서 서울시가 제출한 202억 2천만원 규모의 출연동의안에 대해 보류한 바 있으며, 11월 현재 출연금 규모는 당초 제출했던 금액보다 56억 1천8백만원이 줄어든 146억 2백만원으로 조정되었음.

이는 전년 대비 2.8%인 3억 9천7백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, 2022년도 서울시향 전체 예산액 218억 7천만원의 66.8% 수준으로 2021년도 67.8%와 비교하여 1%p 감소하였음.

〈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금 현황〉

(단위 : 천원)

구분	2018년	2019년	2020년	2021년	2022년(안)
총 예산	20,610,861	21,312,919	25,003,633	20,964,631	21,870,449
출연금	12,118,600	13,626,700	18,009,225	14,204,852	14,601,714
비율	58.8%	63.9%	72.0%	67.8%	66.8%

- 서울시향은 위드코로나 분위기에 맞춰 공연사업을 점차 정상화하기 위해 공연횟수를 전년 대비 16회가 증가한 144회로 편성하고, 이에 따라 수입예산은 전년 대비 32.8%인 3억 6천7백만원 증가한 14억 8천6백만원을 편성하였음.

이는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2019년도 수입예산액 24억 5천3백만원의 60.6% 수준에 불과한 규모이며, 좌석간 거리두기 시행으로 2019년도 공연 횟수보다 20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입액은 감소하였음.

〈서울시립교향악단 공연수입·공연횟수 현황〉

(단위 : 천원)

구분	2018년	2019년	2020년	2021년	2022년(안)
공연수입	2,948,550	2,453,145	2,696,700	1,119,040	1,485,720
공연횟수	130회	124회	177회	128회	144회

라. 2022년 주요 현안

1) 수입예산액 대비 저조한 실적

- 서울시향 자주재원의 대부분은 공연사업과 후원·협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2021년도 목표 대비 달성률은 공연사업 66.4%, 후원금수입 29.8%, 협찬사업 18.1%로 매우 미흡한 상태임.

### 〈2021년도 주요 자주재원 달성실적〉\*

(단위 : 천원)

구분	수입예산액	달성실적액	달성률
공연사업	1,119,040	743,567	66.4%
후원금수입	247,000	73,600	29.8%
협찬사업	2,325,000	420,000	18.1%
<b>계</b>	<b>3,691,040</b>	<b>1,237,167</b>	<b>33.5%</b>

\*2021년도 11.15. 현재 기준

공연사업의 실적은 2017년부터 약 20억원 수준으로 유지되어 왔으나 코로나19 발생연도인 2020년 이후 급감하였는데, 2022년도 수입예산안은 공연사업에서 32.8% 증액, 후원금 및 협찬사업은 2021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음.

### 〈최근 5년 간 공연사업 달성실적〉

(단위 : 천원)

구분	수입예산액	달성실적액	과부족액	달성률
2017년	3,129,270	2,010,209	△1,119,061	64.2%
2018년	2,948,550	2,044,751	△903,799	69.3%
2019년	2,453,145	2,014,681	△438,464	82.1%
2020년	2,696,700	687,093	△2,009,607	25.5%
2021년*	1,119,040	743,567	△375,473	66.4%

\*2021년도 11.15. 현재 기준

- 최근 5개년 간 서울시향의 수입예산액 대비 달성률은 2019년을 제외하고는 70% 미만에 머물렀는데,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7~2019년의 실적액 역시 편성예산액과 큰 차이를 보였음. 특히 공연사업을 제외한 수입예산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협찬사업에 23억 2천5백만원의 예산액을 고정 편성하여 왔지만, 2017년 12억 9천3백만원의 실적을 달성한 이후 10억원 이상 실적을 달성한 연도는 한 번도 없었음.

## 〈최근 5년 간 협찬사업 달성실적〉

(단위 : 천원)

구분	수입예산액	달성실적액	과부족액	달성률
2017년	2,325,000	1,292,823	△1,032,177	55.6%
2018년	2,325,000	940,000	△1,385,000	40.4%
2019년	2,325,000	926,906	△1,398,094	39.9%
2020년	2,325,000	383,182	△1,941,818	16.5%
2021년*	2,325,000	420,000	△1,905,000	18.1%

\*2021년도 11.15. 현재 기준

- 코로나19의 여파로 재단의 사업이 정상화 되지 못할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달성 불가능한 예산액을 편성한 것은 수입감소 예상분을 미리 반영하도록 한 서울시 예산편성기준<sup>1)</sup>에도 맞지 않는 것이므로

예산안 편성 시 당해 연도 및 익년도 재정상황과 환경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입예산을 과대 편성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.

### 2) 미지급 연차수당 지급을 위한 예비비 편성

- 서울시향은 2022년도 지출예산안에 예비비 3억 4백만원을 편성하였는데, 이는 전년도 편성액인 2억 2천2백만원 대비 36.9%가 증가한 것으로 단원 연차수당 2심 소송에서 시향이 패소하여 11억 4천5백만원을 지급하기 위한 것임.<sup>2)</sup>

1) 「2022년도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」 ‘건축재정 기초 반영’

-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수입감소 예상분을 미리 반영하여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익년도 회계결산 시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 책임경영 강화
- 법정 의무경비 제외한 재량지출과 전례답습·관행적 사업 및 부진사업 등을 조정하여 전년 대비 20% 이상 감액 편성

2) 단원 연차수당 소송 개요[사건번호 : 서울고등법원 2019나2042250]

- 소송 청구취지 : 근로기준법 제60조(연차 유급휴가)에 근거 연차휴가 근로수당 지급 청구
- 지급예정금액 : 11억 4천5백만천원
- 소송 진행 경과 : '18.6. 민사소송 제기, '19.8. 1심 패소, '19.9. 서울고등법원 항소, '21.8. 2심 패소/대법원상고중

- 지난 9월 출연동의안 검토 당시 예산안에는 일반예비비 1억원을 포함해 12억 4천5백만원이 편성되었으나, 서울시 자체 심사 과정에서 일반예비비는 70% 감액된 3천만원만 인정받았고, 연차소송 배상금 지급에 대해서는 기관 자구책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'22년도 성과급 6억 2백만원과 임금 상승분 2억 6천9백만을 제외한 2억 7천4백만원만 인정받아 총 3억 4백만원의 예비비가 편성되었음.
- 서울시향의 자구 노력에도 불구하고 단원과의 분쟁으로 인해 발생한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성과급과 임금 상승분을 소요예산으로 사용할 경우 또 다른 분쟁이 생길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 또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

## 〈2022년도 서울시향 지출예산(안)〉

(단위 : 천원)

정책/단위/세부사업	2022년도	2021년도	증 감	증감율
총 계	21,870,449	20,964,631	905,818	4.3%
문화도시·서울구현	6,031,663	4,287,315	1,744,348	40.7%
사업비	6,031,663	4,287,315	1,744,348	40.7%
공연사업	4,699,348	3,108,757	1,590,591	51.2%
정기공연	2,564,881	1,987,972	576,909	29.0%
기업공연	57,984	57,677	307	0.5%
외부출연	130,211	115,175	15,036	13.1%
시민공연	423,853	428,691	-4,838	-1.1%
순회공연	940,000	10,000	930,000	9300.0%
대관료	582,419	509,242	73,177	14.4%
일반사업	1,332,315	1,178,558	153,757	13.0%
전산개발	237,810	153,600	84,210	54.8%
월간차발매	177,832	172,830	5,002	2.9%
교육사업	669,482	661,874	7,608	1.1%
티켓구매차관리	17,740	17,740	-	-
추천사업	33,800	33,800	-	-
단원모집	26,175	26,175	-	-
음반사업	75,912	20,000	55,912	279.6%
디자인제작	45,000	44,000	1,000	2.3%
협찬사업	38,500	38,500	-	-
단원트레이닝	10,064	10,039	25	0.2%
행정운영경비	15,534,786	16,455,270	-920,484	-5.6%
인건비	14,136,501	14,930,215	-793,714	-5.3%
급여	14,136,501	14,930,215	-793,714	-5.3%
관리비	1,091,825	1,224,715	-132,890	-10.9%
교육훈련비	38,000	30,000	8,000	26.7%
여비	162,045	293,965	-131,920	-44.9%
업무추진비	44,400	52,650	-8,250	-15.7%
관서업무비	33,140	32,540	600	1.8%
직무수행비	51,680	46,640	5,040	10.8%
복리후생비	260,700	256,480	4,220	1.6%
사무관리비	60,914	80,114	-19,200	-24.0%
차급수수료	268,767	265,547	3,220	1.2%
공공요금및체세	172,179	166,779	5,400	3.2%
시설비	306,460	300,340	6,120	2.0%
자산취득비	71,400	43,800	27,600	63.0%
시설유지관리비	235,060	256,540	-21,480	-8.4%
예비비	304,000	222,046	81,954	36.9%

담당 조사관	연락처
심형준	02-2180-8113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.

5. 토론요지 : 없음.

6.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: 구성하지 않았음.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출석위원 전원 찬성)

8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.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

#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 동의안

의안 번호	2708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1년 8월 11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## 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시에서는 시민에게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 양질의 공연예술 활동을 제공하기 위하여 각종 사업을 수행하는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
- 나. 이에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사업개요

- 1) 사무명 :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금
- 2) 추진근거
  -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  -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- 3) 필요성 : 서울의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등 사업수행을 위하여 출연 필요
- 4) 사무내용
  - 음악연주활동
  - 음악·공연 교육사업 및 조사·연구
  - 연주자 육성사업

- 공연예술시설의 관리·운영
- 국내·외 공연예술단체와의 교류·협력
-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이 위탁하는 사업
- 그 밖에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한 부대사업

나.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기관 개요

- 1)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5
- 2) 규모 : 건물 2,043.58㎡
- 3) 소요예산 : 20,220백만원

※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나. 예산조치 : 2022년도 예산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문화정책과 문화협력팀 이지나 (☎ 2133-2519)